

제 호



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

1. 기 관 명:

2. 소 재 지:

3. 대 표 자:

위 기관을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

직인